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93
----------	------------

제안연월일 : 2025년 9월 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직장이나 학교 등이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주민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학교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자 함.
- 또한,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한 주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만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의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함(안 제9조제1항제

4호 가목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를 삭제하고, 안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00분의 40 감면

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조례안	수정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생략) 2. 100분의 60 감면 가. <u>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u>주민으로</u>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 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4.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u>주민(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u>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 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u><신설></u> <u><신설></u>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u>주민으로</u>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 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조례안과 같음) 4. 100분의 40 감면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u>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 점을 포함한다), 재 학하는 학교의 소재 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 동이나 생활체육활 동을 위해 6개월 이 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u> 5. (조례안 제4호와 같음) ②~③ (조례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학교”를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00분의 40 감면

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생략) 2. 100분의 60 감면 가. <u>학교</u>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 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 는 경우 3.~4.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u>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 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100분의 40 감면 가. <u>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 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